

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 인가신청 사실의 공고

「은행법」 제58조제1항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5조제9항 및 제5조의4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외국은행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2월 8일
금융위원회

- 아 래 -

가. 신청현황

신청자	신청일자	신청 내용
더노던트러스트 컴퍼니 서울지점	2022.10.18.	은행법 제58조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폐쇄인가 신청

나. 의견 제시방법 및 기간

위 '가. 신청현황'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'22.12.28일까지 아래의
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자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
은행과 박종혁 사무관(02-2100-2952, jhpark212@korea.kr)

2022. 12. 8.

금 용 위 원 회